##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7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김경만·신정훈·강선우

김홍걸 • 박홍근 • 윤미향

유동수・박 정・송갑석

이성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에 따라 기술 자료를 취득한 경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는 기술유용행위의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

자의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안 제35 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대가 등"을 "대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해당 임직원의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행위와 관련한 제24조의5에 따른 조정 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4항의 행위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1. 하도급거래 중이거나 그 거래가 종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배제하고 그 하도급거래에서 거래할 것을 정하거나 예정하였던 제3자와 하도급거래 대상이었던 목적물등에 관한 거래를 한사실

- 2. 하도급거래 중이거나 그 거래가 종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대상이었던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하거나 제3자 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사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협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22조제5항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3제4항"으로 한다.
-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 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공표 여부
- 9. 위반행위의 은폐, 은닉 등을 하려는 시도 여부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 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②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u>대가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임직원의 비밀유지 및 목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u>적 외 사용금지 약정 등</u>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 설>	
<u>③</u> (생 략)	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의 행위와 관련한 제2 4조의5에 따른 조정 또는 제35 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4항의 행위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1. 하도급거래 중이거나 그 거 래가 종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배제하고 그 하 도급거래에서 거래할 것을 정 하거나 예정하였던 제3자와 하도급거래 대상이었던 목적 물등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
- 2. 하도급거래 중이거나 그 거 래가 종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대상이었던 목적 물등을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등 의 위탁을 한 사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협약 체결에 필 요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 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신 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 ⑧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제12조의3제4항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2조의3제4항
③

있다.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u>4.</u> ~ <u>7.</u>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설> -----.

- 1. ~ 3. (현행과 같음)
- 4.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공표 여부
- 5. ~ <u>8.</u> (현행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 9. 위반행위의 은폐, 은닉 등을 하려는 시도 여부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 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 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